



## 온타리오금연법 2005 이 법이 주거형 보호시설에 주는 영향

### 기본 내용

- 온타리오금연법(SFOA)은 2006년 5월 31일에 발효됩니다.
- 이 법은 밀폐된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직장인들과 대중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.

### 주거형 보호시설, 지정된 재향군인 시설, 정신질환 치료시설

모든 밀폐된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반면, 특별히 지정된 시설의 운영자는 거주자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통제흡연구역(CSA)을 열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.

이러한 특별 지정 시설에는 법으로 명시된 장기 요양소(LTC) 및/또는 은퇴주택으로 운영되는 주거형 보호시설 또는 보건장기요양부(Ministry of Health and Long-Term Care)나 사회복지부(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)가 관리하고 후원하는 정부보조 주택이 있습니다. 또한 **정신건강법**에 따라 지정된 정신질환 치료시설과 SFOA 규정에 따라 지명된 재향군인 시설이 포함됩니다.

### 운영자의 의무

지역 자치도시 조례에 의거하여 일부의 경우 허용되었던 지정흡연실(DSR)은 이제 금지됩니다. 그러나, 지정된 장기 요양소(LTC)의 운영자는 통제흡연구역(CSA)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통제흡연구역에는 특정한 요건이 있습니다. 이러한 요건은 본 규정의 제 18조와 첨부된 부칙 1과 2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.

([www.elaws.gov.on.ca/DBLaws/Regs/English/060048\\_e.htm](http://www.elaws.gov.on.ca/DBLaws/Regs/English/060048_e.htm)). 사업자가 200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CSA 제안 도면을 제출하고 2006년 12월 31일이나 그 전까지 해당 요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명시한 경우, CSA에 대한 시공 및 관리 요건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# 고용주의 의무

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을 해야 합니다.

- 직원, 거주자, 방문자에게 흡연 금지를 알린다.
- 재떨이와 재떨이 구실을 하는 모든 물건을 치운다.
- 종업원, 주민, 방문자에게 밀폐된 직장에서의 흡연 금지를 알린다.
- 통제흡연구역을 제공하는 경우, 고용주는 다음의 필수 표지문을 통제흡연구역의 모든 입구 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, 이 법과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.
  - “이 곳 거주자에 한해 여기서 흡연이 허용됩니다. 그리고 간접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으로, 종업원은 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.”라는 표지문

- 통제흡연구역의 최고 허용인원을 나타내는 표지문.
- 모든 입구, 출구, 화장실 및 기타 적당한 위치에 규연 표지문을 게시한다. 필수 표지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## 통제흡연구역

- 통제흡연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려면, 해당 방은 규정에 따른 통풍시설과 표지문을 포함하여 이 법과 규정의 모든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.
- 이 방에서는 주민에 한하여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. (방문자는 주민과 동행할 수 있으나 이 방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는 없습니다.)
- 흡연을 원하는 주민은 운영자가 보기에 자기 스스로 종업원의 도움없이 흡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종업원은 통제흡연구역에 출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.

## 흡연소

운영자는 흡연소를 옥외에 제공하여 흡연 거주자와 종업원을 수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옥외 흡연소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그 구조가 두 개 이상의 벽과 한 개의 지붕 이하로 구성되도록 해야 합니다.

## 집행

지역 보건소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검열을 실시하고 불만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.

## 처벌

이 법조항 위반에 대하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벌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, 이는 사안이 치안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뜻합니다. 개인은 최고 \$5,000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이 자료는 간단한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다음 무료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.

- **INFOline 1-866-396-1760**
- **TTY 1-800-387-5559**

업무시간: 월요일-금요일 오전 8시 30분 - 오후 5시

온타리오금연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타리오 보건진흥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http://www.mhp.gov.on.ca/english/health/smoke\\_free/legislation.asp](http://www.mhp.gov.on.ca/english/health/smoke_free/legislation.asp).

2006년 5월